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18 (2021. 7. 12 ~ 7. 16)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공정거래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시 반려 근거 마련
	기업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상품 검색결과 제공 시 광고 구분 및 표시 의무 부과, 조회수·판매량·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기준 공개, 맞춤형 광고 내용·방법 사전 고지, 소비자에게 일반광고 선택권 부여.
국회 계류안	IP	③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공포 법령	국가계약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와 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때 소액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을 두 배로 상향.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금액 기준 축소.
입법/행정 예고	중대재해	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건설업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 기업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마련. 3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 전담인력 배치 의무 부과.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서일준 (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기업결합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종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관련 업계 종사자를 비롯하여 해당 기업과 연관된 지역경제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X1H0C6P3R0G1H3H3F9R2N6E2Q9C2		21.07.02.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재화 등 판매와 관련한 허가 ·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해당 전자게시판에 거짓 · 과장된 정보가 게재될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몰 등에 접속하거나 재화 등을 검색하는 경우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재화 등의 배열순위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재화 등 상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 · 표시하고, 조회수 · 판매량 · 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됨을 명시함.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거래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가운데 국내 사업자에게만 현행법상 규제를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리를 지키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역외적용(안 제4조의2 신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거짓 · 과장된 정보를 게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선일보 21.07.07. 與송재호, 플랫폼 해외사업자 책임회피 방지법 발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7/07/6D4KWYAUJBH45AH5ID5OHV7OK4/	21.07.06.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다.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안 제13조제2항제11호 신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다른 법률에 따른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된 허가 ·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검색결과 · 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 상품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 · 표시하여야 하고, 조회수 · 판매량 · 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됨을 명시함. 마. 이용후기 수집 · 처리정보의 공개(안 제20조의4제3항 및 제45조제4항제9호 신설)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 · 처리와 관련된 게시기간 · 삭제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 · 광고의 수신 선택(안 제20조의5 및 제45조제4항제10호 신설) 맞춤형 광고를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형태의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 시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되,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사.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안 제20조의6,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2호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매출액 · 이용자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결과 및 변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출액 · 이용자수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해당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G1V0C6G2C4P1K9I2Z3T2U4I0D8Q8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 및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컨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 등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렇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18조의 방송시간 제한의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에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형평성 문제와, 이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는 이중규제의 문제도 발생함. 또한, 「청소년 보호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해약물, 유해매체 등은 대부분 완전금지 유형이며, 게임의 경우 본질적으로 완전금지대상이 아닌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유형이므로 다른 야간출입제한 등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셧다운제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도 부합함.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중독되는 원인이 복잡·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함. 이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삭제 및 제59조).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1J0M1S2F0R1X4U1W4F2L8E9E6S0	머니투데이 21.07.10. 여가부 폐지론 부른 게임 셧다운제…10년 만에 '셧다운'되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914250678555	21.06.25. 제안 21.06.28. 여가위, 문체위 회부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이유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해당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3호차목 신설)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 제품을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함. 나.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및 1인 견적이 가능한 계약 대상 확대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제26조제6항 삭제) 조달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계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액 수의계약 특례를 상시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뉴시스 21.06.29. 공공조달 소액 수의계약 한도 두 배 상향…분쟁조정 대상 확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9_0001493192&cID=10401&pID=10400	21.07.06. 시행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계약 체결 명시(제42조제4항 및 제104조,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4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합 심사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령에 명시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개선(제76조제1항 신설, 제76조제9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마.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 최소 금액 기준을 낮추고, 이의신청의 대상을 입찰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 입법/행정 예고 법안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법무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제안이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하여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한국경제 21.07.09. 열사병도 처벌 대상 중대질병?… 기업계·노동계 모두 '불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0903601	21.07.12. ~ 21.08.23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안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 내지 제9조, 별표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0조, 별표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 -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1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함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2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안전인력 배치·안전예산 편성·안전계획 수립·안전점검 수행 확인 조치를 하고, 연 2회 이상 위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수정, 인력·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3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서면자료의 보관(안 제15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4510?opYn=Y&lsNm=%EC%A4%91%EB%8C%80%EC%9E%AC%ED%95%B4&isOgYn=Y&edYdFmt=2021.+7.+13.&stYdFmt=2021.+1.+1.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동아일보][사설]모호함투성이 중대재해법 시행령, 현장 혼란만 키울 것(2021.07.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1/107900885/1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12일자로 입법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음. 시행령은 '적정인력 배치','적정예산 편성'을 사업주 등의 의무로 규정함. 몇 명의 인원, 몇 %의 예산을 투입해야하는지 명시하지 않았고, 직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사업주 처벌을 면제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년 안에 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이 같은 병에 걸릴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24개 직업성 질병도 문제. 야외작업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열사병, 여름감기와 증상이 비슷한 레지오넬라증, 업무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B,C형 간염 등이 포함된 데다 얼마나 중증일 때 처벌하는지도 정하지 않음. 노동계는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히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병이 빠진 걸 문제 삼음. 10월에 내놓을 시행령 최종안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손을 봐야함.

[경향신문][사설]모법에 이어 시행령마저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2021.07.11)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07112026025

주요내용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발표되자마자 논란에 휩싸임. 뇌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이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되는 등 법 적용 대상이 크게 축소되고, 사업주에 부과된 의무는 모호하게 규정돼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음. 시행령은 안전보건 관리 구축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데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음. 기준이 모호하면 사고가 났을 때 인과관계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음.

정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제기된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해야함.

[이데일리][사설]책임 범위 모호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할 점 많다(2021.07.1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29113864&mediaCodeNo=257&OutLnkChk=Y

주요내용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노사 양쪽이 모두 반발함. 예를 들면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만성질환을 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또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라는 모호한 표현은 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음.

중대재해처버법의 취지는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경영자나 사업주가 사전에 이행해야할 의무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돼야 함.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자와 노동자 각각의 책임 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는 장치가 필요함.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다시 듣고 충실한 보완 작업을 해야할 것.

[한국경제][사설]시행령까지 모호한 중대재해법, 범법자 양산할 판(2021.07.0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70902381

주요내용 최근 공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모법인 '중대재해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겠다던 당초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여전히 모호한 부분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남. 이런 식이면 현장 점검을 나가는 지방고용청 공무원들의 재량에 따라 기업인들이 범법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판가름날 판.

경제계는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부분도 명확하지 않음. 안전보건 예산은 모두 '적정'수준, 얼마가 적정한지 과연 누가 판단하나. 법의 취지가 '기업인 처벌'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이라면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 시행령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규제 법규가 모호할수록 이를 판단하는 부처의 자의적 행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큼. 벌써부터 전현직 고용노동부 출신들의 기업 또는 로펌행이 이어지고 있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공정거래부문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기업부문

안호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4
E : hbahn@draju.com

IP부문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국가계약팀

장성욱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724
E : sujang@draju.com

중대재해처벌법대응본부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